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2026년 버스,화물 시범사업 추가]

주 관 :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KAPPD GyeongGi-Do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사업지원 : 

협력기관 :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

사업 참여 대상

□ 신청대상(택시)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운전면허 보통 1종 또는 2종 이상 소지자
-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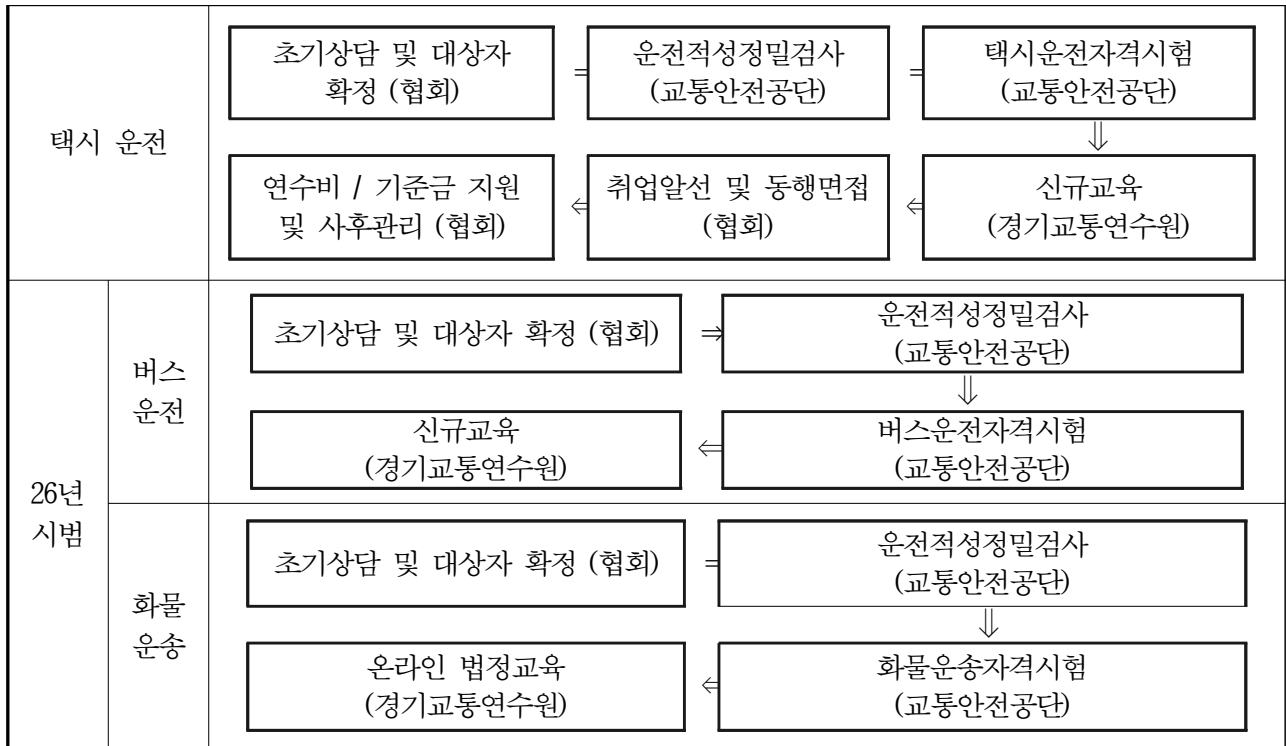
□ 신청대상(버스) “26년 시범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면허취득 후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자
-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신청대상(화물) “26년 시범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운전면허 보통 1종 또는 2종 이상 소지자로서 자가용 2년이상 또는 사업용 1년이상 운전경력을 보유한 자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에 적합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사업 진행과정



2

운송자격별 시험과목

□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목별 출제 문항수

구분	출제 문항수	출제 범위
총 계	70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0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규, 벌칙 등 법령 전반적 내용
안전운행 및 자동차 구조 취급 요령	20	○ 차량 구조 기본, 차량관리 및 점검, 안전 운행을 위한 취급법 등
운송서비스	20	○ 방어운전, 사고예방, 응급조치 요령, 안전수칙 등
지 리	10	○ 도로 환경별 운전요령, 응시 지역의 주요 지리, 도로망 문제 등

□ 화물운전 자격시험(26년 시범사업) 과목별 출제 문항수

구분	출제 문항수	출제 범위
총 계	80	
교통 및 화물운송 관련 법규	25	○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령 전반(벌칙, 운행기준, 허가절차 등)
화물취급요령 및 운송서비스	15	○ 화물의 적재, 적하 요령, 운송서비스 기본, 화물문서 절차 등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예방	25	○ 안전운전, 사고예방, 차량 점검 및 관리, 화물안전확보 등
운송서비스 실무지식	15	○ 고객응대, 운송실무 관련 일반상식 등

□ 버스운전 자격시험(26년 시범사업) 과목별 출제 문항수

구분	출제 문항수	출제 범위
총 계	80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25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교통사고 예방 및 법규 적용 등 운수,교통 관련 법규 전반
자동차관리요령	15	○ 차량 기초 점검 및 관리지식, 정기점검 절차, 기본 정비 개념 등
안전운행요령	25	○ 방어운전, 위험예측, 날씨 및 도로상황 대응 등 안전운전 핵심 지식 등
운송서비스	15	○ 승객 응대, 고객서비스, 민원유형 대응, 운송서비스 마인드 등

3

서비스 제공절차

구 분	세 부 내 용	지 원 내 용
초기상담 및 대상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방 및 지회 방문, 이메일, 팩스, 카카오톡채널 등으로 신청서 작성 · 운전경력, 사고이력, 차량개조(보조장치 필요유무) 등 확인 ·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안내 · 택시운전자격시험 문제집 제공 	상담 및 문제집 제공
운전적성 정밀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공단 자격검사(시험)장 (지역 상관없음) ·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1577-0990) 원서접수 · 시험시간: 오전 9시 또는 오후 1시 · 운전면허증, 안경(필요시), 4~5시간 소요 · 검사 후 판정표를 발급 후 협회 제출 	검사로 25,000원
운수업 운전자격시험 (택시, 버스, 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공단 자격검사(시험)장 (지역 상관없음) · 방문 또는 인터넷 원서접수 · 별도교육 없이 자발적으로 시험 준비 · 필기시험(60점 이상 합격) · 필요서류: 운전적성정밀검사판정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시험응시표 사본 및 자격증 사본 협회 제출 	시험료 11,500원 발급비 10,000원
신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교통연수원 실시(031-251-6191) · 인터넷 예약접수 · 16시간 교육(1일 8시간 / 2일) · 연간 40~45회 실시(월 3~4회) · 필요서류: 운수업 운전면허 자격증 · 교육수료확인증 사본 협회 제출 	교육비 25,000원 (지역별 상이)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사업장을 통한 개별 취업알선 - 예비취업자 동행면접 실시 - 차량개조 필요시 택시사업장과 협의 후 지원 	동행면접 실시 및 보조장치 설치지원
기준금 지원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취업자에 대한 기준금 지원 · (재)취업자: 1일(8시간 기준) 10,000원×25일×5개월 - 상담 및 자원연계 진행, 재취업 지원 	(재)취업자 기준금지원 및 상담

4 기준금 지원에 대한 안내(택시만 해당)

□ 취업장애인 및 재취업장애인

- 1인에 대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택시면허시험의 경우 최대 3회까지 재정적 지원을 하며, 3회 이상 탈락할 경우 개인부담으로 택시면허를 취득함.(단, 신규교육과정 지원 및 취업알선 등 가능)
- 개별적으로 택시면허 취득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표, 택시면허자격증 등)를 협회로 제출 시 개별 통장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증빙서류 분실 시 지급 불가)
- 취업자 기준금지원의 경우 택시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부터 5개월간 지원되며, 1일 8시간 이상 25일 근무를 하여야 지급함.
- 취업자 기준금 지급 예시

취업일	1차 지급일	2차 지급일	3차 지급일	4차 지급일	5차 지급일	비고
2026. 08. 01.	2026. 09. 15.	2026. 10. 15.	2026. 11. 15.	2026. 12. 15.	2027. 01. 15.	5차 지급

※ 택시사업장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 지급일은 상이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1일(8시간 기준) 10,000원(월 최대 25일 지원)
 - ☞ (재)취업장애인 $10,000\text{원} \times \text{월}25\text{일} \times 5\text{개월} = 1,250,000\text{원}$
- 취업자 근속지원비 지원의 경우 기준금을 5개월간 지원 다 받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 해 지급되며, 한 달 15만원씩 2번 지급함.
 - ☞ 취업장애인 $150,000\text{원} \times 2\text{개월} = 300,000\text{원}$

□ 택시사업장

- 고용을 확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카드단말기, 미터기 사용방법 지역 지리 등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연수비 및 연료비를 지원
 - ☞ 연 수 비 $50,000\text{원} \times 3\text{일}(\text{일}4\text{시간 기준}) = 150,000\text{원}$
 - ☞ 연 료 비 $50,000\text{원} \times 1\text{회} = 50,000\text{원}$